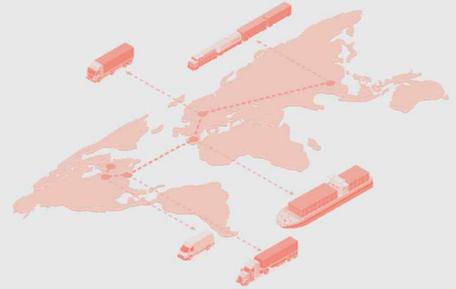




베트남 임가공 제도와 EPE 기업에 대한 연구

베트남 임가공 제도와 EPE 기업에 대한 연구



목 차

제1장 조사 배경 및 개관	5
제2장 임가공 면세 제도의 의의와 활용	7
제1절 임가공 제도의 의의와 임가공 당사자 권리 및 의무	7
제2절 임가공 수탁자의 관리 책임	9
제3절 임가공 면세 대상의 범주	12
제4절 임가공 계약의 청산 절차	18
제3장 수출가공기업제도 의의 및 활용	21
제1절 수출가공기업의 의의 및 혜택	21
제2절 수출가공기업의 조건	24
제3절 수출가공기업의 설립	28
제4절 수출가공기업의 신고 실무	32
제4장 내국수출입의 의의와 관련 이슈	39

본 보고서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KOTRA 및 저자들은 해당 보고서의 내용 전체 및 일부로 인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요 약

- (개요) 베트남은 임가공 기업 및 수출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혜택 및 수출입세 면세 혜택 등을 제공. 대표적인 임가공면세, 수출제조면세, EPE 기업 제도가 있으며, 3가지 형태는 임가공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필요.
- (임가공면세제도) 해외 계약자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임가공 수탁자는 임가공 설비 및 임가공 계약 보고 후 원재료 수입 등에 대해 면세 혜택 적용 가능.
- (수출가공기업제도) 수출가공기업제도는 베트남 국내에 위치하였어도 비관세구역으로 간주하여 여러 혜택을 수혜. EPE 기업 세제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절차, 및 조건 충족, 사후 관리 의무 이행 필요.
- (내국수출입제도)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 내국수출입제도 폐지안이 이슈. 내국 수출입 제도의 의의와 형태, 폐지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 사항 등 조사.

◆ 보고서 작성 취지와 유의 사항 ◆

베트남은 수출용 물품 제조 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투자 혜택 및 수출입세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임가공, EPE 기업 제도 등에 관해 여러 관련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산재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모호한 규정에 대해 여러 건의 공문이 산발적으로 발표되어 처음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입장에서 제도에 대한 파악, 활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코트라 하노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로 접수되는 다양한 질의 또한 이러한 임가공 면세, EPE 기업 제도 활용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해석, 언어적인 한계로 인해 기업들이 활용할 만한 가이드가 부재하였다. 본 연구 보고서는 베트남 제조업으로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이 제도적인 틀을 확인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베트남의 법령과 공문의 내용을 위주로 조사, 작성되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수출제조를 제외한 임가공 면세, EPE 기업 관련 사항을 위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이 깊은 내국수출입 제도의 의의 및 폐지안 상세 내용,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해 함께 정리하였다. 다만, 베트남의 임가공 및 EPE 제도는 오랜 기간 현지에서 업무를 해온 기업들 입장에서도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많은 제도로서, 활용을 검토하는 기업은 사전에 관련 법령의 철저한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추천한다.

I. 조사 배경 및 개관

□ 베트남 임가공 제도의 개관

○ 베트남 수출용 물품 제조용 원재료 면세 혜택의 유형

- 베트남은 임가공 용역 수주 촉진, 수출용 물품 제조 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투자 혜택 및 수출입세 면세 혜택 등을 제공.
- 원재료에 대한 수출입세 면세 혜택 제도에 대한 활용이 활발하며, 베트남에서 수출입세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아래와 같이 3가지 활용.

- 1) 임가공 거래 제도
- 2) 수출 제조 거래 제도
- 3) EPE 기업 제도

◆ 임가공과 수출제조 ◆

베트남 면세 제도 이해를 위해서는 임가공 제조 형태와 수출제조 형태의 구분이 필수적임. 임가공(Gia công) 제조는 임가공 위탁자의 계산에 따라 하나의 임가공 계약에 따라 원재료 구매 및 완제품의 판매가 이뤄지며 생산을 이행하는 임가공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생산 활동을 이행.

이에 비해 수출 제조(Sản xuất xuất khẩu)는 제조자 본인의 판단 하에 원재료 구매를 위한 계약 및 완제품 수출 계약이 개별로 체결되며, 제조자의 계산 하에 생산 활동 이행. 임가공 제조는 임가공 면세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활용하는 거래 형태며, 수출 제조 형태는 수출 제조 거래 기업 및 EPE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거래 형태임.

○ 임가공 면세 제도 (Gia công)

- 임가공의 정의: 임가공 수탁자가 보수를 받고 임가공 위탁자의 원재료 및 소모품을 일부 혹은 전부 사용하여 생산 과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행하는 것
- 임가공 계약 (Hợp đồng gia công) : 임가공 용역 수행을 위해 체결되는 계약
- 베트남 기업이 외국 상인을 위한 임가공 거래 수탁 시, 수출입세법에 따른 수출세 및 수입세 면세 혜택(수출입세법 16조 6항) 적용 가능. 단, 사전 임가공 생산 시설 등록 및 임가공 계약서 등록 등 절차 이행 필요.

- 수출제조 면세제도(Sản xuất xuất khẩu)
 - 수출제조 형태는 원재료의 수입 및 생산, 완제품의 수출을 제조자가 자신의 계산 하에 이행. 임가공 기업과 달리, 외국 상인과의 임가공 계약서가 없이 제조 생산을 하며, 임가공 계약이 원재료의 수입 및 완제품의 수출에 대해 하나의 계약 내에서 모두 결정됨에 비해, 수입 계약과 수출 계약이 별도로 존재.
 - 수출 제조 기업 또한 수출용 물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 면세 혜택 존재 (수출입세법 16조 7항). 일반 임가공 제도와 비교 시 기계, 설비에 대한 면세 규정이 없는 등, 면세 혜택이 제한적인 편.
- 수출가공기업제도(Doanh nghiệp chế xuất)
 - 수출가공기업의“Chế xuất”은 제조 가공의 “제조”와 수출의 “출”의 표현이 결합된 표현, 수출을 하기 위해 이행하는 제조 및 가공 활동 의미. 즉, 수출가공 기업은 수출 제조 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법령 상 비관세구역으로 간주, 베트남 영토와 분리된 외국으로써의 특징을 가짐.
 - 원재료의 수입 및 생산, 수출을 위탁자가 아닌 EPE 기업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수출제조 면세 기업과 유사.
 - 차이점으로 물품 반출입 관리에 있어 비관세구역에 적용되는 법률과 동일하게 받는다는 부분 및 베트남 기업과의 물품 이동을 일반적인 “수출” 및 “수입” 관계로 행한다는 점이 있음.
 - * 일반적인 수출제조기업은 베트남 국내에서 원재료를 조달 시 국내 거래로써 부가세 납부 필요, EPE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조달하는 원재료에 대해서 “수출”로 간주되기에 0%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필요
 - 수출 활동 장려의 차원에서 수출용 물품 생산용 원재료에 대해 한국의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 혜택을 주고 있으며, 베트남은 수입 당시 납부 필요 세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기조로 하고 있음.
 - 3가지 형태의 수출입세 면세 혜택 기업은 주기적인 “수책관리”라는 면세 원재료의 수불 관리 의무 및 주기적인 보고 의무 이행 필요.

II. 임가공 면세 제도의 의의와 활용

제1절 임가공 제도의 의의와 임가공 당사자 권리 및 의무

□ 임가공 제도의 의의

○ 외국 상인을 위한 임가공 제도에 대한 면세 혜택

- 임가공이란, 임가공 수탁자가 보수를 받고 임가공 위탁자의 원재료 및 소모품을 일부 혹은 전부 사용하여 생산 과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행하는 것.
- 베트남 국내 기업에서 외국 상인을 위한 임가공 거래를 체결하고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수출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 원재료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적용 가능.

* 외국 상인을 위한 임가공 거래 해당 경우

- 1) 국내 기업이 EPE기업 및 수출제조구역, 비관세구역에서 임가공 거래를 수탁받은 경우
- 2) 국내기업/EPE기업/FDI기업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임가공 거래를 수탁받은 경우

□ 임가공 위탁자와 임가공 수탁자의 의무와 권리

○ 베트남 상법 상 임가공 위탁자 및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규정

◆ 임가공 위탁자의 의무와 권리(상법 시행령) ◆

- a) 가공 계약서에 따라 원재료 및 소모품 일부 혹은 전부 제공
 - b) 임가공 계약 청산 후, 임가공 상품, 유상 혹은 무상 대여된 기계와 설비, 남은 원재료, 부재료 및 소모품과 폐기물의 회수, 단 해당 물품들이 현지에서 내국 수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c) 임가공 계약에 따라 임가공 상품 생산 기술 교육 및 품질 감시를 위한 전문가 파견
 - d) 상표권 사용권리 및 원산지에 관한 책임
 - e) 임가공계약서와 관련있는 베트남 법령 규정 준수 및 임가공 조건 준수
 - f) 임가공 상품의 내국 수출 가능
- : 관련 있는 자들 간의 계약에 따라 유상, 무상 대여된 기계 및 장비, 남은 원재료, 부재료 및 소모품, 폐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내국 수출이 가능하나, 수출입 세법 및 재정적인 의무 이행 필요

◆ 임가공 위탁자의 의무와 권리(상법 시행령) ◆

- a) 임가공 계약 이행을 위한 소요량 및 소실 비율에 따라서 일시 수입되는 물품 및 수출되는 임가공 상품에 대한 수출입세법 상 수출세 및 수입세 면세 권리
- b) 다른 상인을 임가공을 위해 고용할 권리(외주 임가공 권리, 외주 임가공의 경우 3절 참고)
- c) 임가공 계약에 따라 임가공을 위한 원재료, 부재료, 소모품의 일부 혹은 전부를 공급받을 권리, 다만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 부자재, 소모품에 대한 수출입세법 규정에 따른 수출세는 납부 필요
- d) 임가공 위탁자의 정산금을 임가공 물품으로 받을 권리, 단 물품이 수출입 금지 품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조건부 수출입 대상인 경우 관련 조건 충족 필요
- e) 가공 수출, 수입, 국내 생산과 관련한 베트남 법령 규정 준수 및 임가공 계약과 관련한 조건 준수
- f) 임가공 위탁자의 위임이 있을 경우, 유상, 무상 임대된 기계, 설비 및 남은 원재료, 부자재, 소모품 및 폐품, 폐기물의 내국 수출 절차 이행

제2절 임가공 수탁자의 관리 책임

□ 임가공 수탁자 관리 의무 개요

- 임가공 시설 및 계약서 사전 보고 및 관련 문서 제출 필요
 - 임가공 대상 물품 첫 수입 전 수책 보고 진행 예정 세관 지국에 임가공 시설 및 원재료 등 보관 장소, 임가공 계약서 관련 보고 필요.
 - 임가공용 공장 및 생산시설을 임대 사용 시, 관련 임대 계약서 제출 필요. 또한 임가공 시설 관련 내용의 변경 시 세관 보고 필요
- 임가공 관련 정보의 보관 필요
 - 임가공 계약과 관련하여 임가공 계약서 및 그 부록, 상품별 원재료 및 소모품 소요량, 제품 샘플, 생산 공정도 등 비치.
 - 임가공 면세 관련 감사 및 세관 요청 시 보관된 서류 제출 의무.
- 수책 보고 관련 의무
 - 원재료, 물자 사용 현황, 기계 장비 및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한 입-출-보관 사항 정산 보고 필요.
 -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한 실제 소요량 및 보고 서류의 정확성 책임 및 세관 요청 시 충분한 소명 자료 제출 필요.

□ 임가공 시설 보고 의무

○ 임가공 계약 활동 시작 전 임가공 시설 원재료 등 보고 장소 사전 보고 필수

- 추후 임가공 수출입 절차, 수책 보고 등의 세관 절차 진행이 예상되는 세관 지국으로 보고, 세관은 필요 시 보고된 시설에 대한 검사 진행.

◆ 임가공 시설 보고 사항 (관세법 시행 규칙) ◆

임가공 시설 설치 후, 임가공 활동 이행 전 임가공 시설과 임가공용 원재료, 소모품 및 임가공 계약 이행용 기계, 설비 등의 보관 장소에 대해 세관 지국에 보고가 필요하다. 생산 시설 보고는 관세법 시행규칙 부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투자 등록증, 기업 등록증 및 임가공 시설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 관할 세관, 신고인 관련 정보, 기업 형태 (외투기업, EPE 기업, 국내 기업 등)
- 생산 시설 주소 및 관련 정보 (원재료 등 보관 장소, 기계설비 및 생산시설 현황, 생산량 정보, 생산 주기 등), 고용 인력 정보
- 생산 분야 (투자 등록증 등과 부합할 것), 원재료 및 생산 물품의 분야 (가죽, 기계, 전자, 식품, 목재, 플라스틱, 농산품 등에서 선택)
- 원재료, 소모품, 생산 물품 관리 방식 (소프트웨어 활용 여부 등)
- 임가공 시설에 대한 세관 실사 여부
: 임가공 계약서 및 임가공 시설에 대한 보고 시 세관은 필요한 경우 검사, 실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 실사 이행 여부에 대한 기재
- 외주 임가공 시 외주 가공 관련 정보
- 관련 법률 부합 여부
: 730일(2년) 내에 신청인의 밀수, 탈세, 회계 관련 위반 행위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만일 상기와 같이 보고한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사항에 대해 3일 내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

□ 임가공 계약서 필수 내용 및 임가공 계약서 보고 의무

○ 적정한 임가공 계약서 작성 필요

- 상법 시행령 상 임가공 계약서에 최소한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적절한 임가공 계약서 작성 필요.

◆ 임가공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상법 시행령) ◆

- 임가공 계약 당사자 및 임가공을 직접 이행하는 업자의 이름과 주소
- 임가공 물품의 이름과 수량
- 임가공 가격
- 정산 주기 및 지급 방법
- 임가공 대상 원재료 및 부재료 리스트
 - 수입 원재료, 부재료, 물자의 리스트, 수량 및 가격
 -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가공 원재료, 부재료, 물자의 명세
 - 완제품 한 단위별 요구되는 소요량 정보, 생산 과정에서의 단위 실량(수출물품을 실제로 형성하는 양)과 가공 과정에서의 손모량 (원재료 손실량) 비율 포함
- 임가공 계약 이행을 위해 유상 임대, 무상 임대 혹은 증여되는 기계 및 설비 리스트
- 임가공 계약 종료 후 폐기물 및 폐품의 처리 방법 및 유상, 무상 임대된 기계, 설비와 잉여 원재료, 부자재 및 물자의 처리 원칙
- 배송 주기와 장소
- 물품의 상표권 및 원산지
- 임가공 계약 기한

○ 임가공 계약서 세관 보고

- 임가공 계약서 체결 후, 임가공을 이행하기 위한 원재료, 소모품 등의 수출입 전에 임가공 수탁자는 생산 시설 보고를 진행한 세관 지국에 임가공 계약서 및 계약서 부록에 대한 보고 필요 (전자 신고 가능). 만일 이후 임가공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요.
- 임가공 계약서 보고 시 계약서 접수번호 발급. 해당 발급번호는 임가공 계약과 관련된 수출신고서, 수입 신고서 상에 기재 필요.

제3절 임가공 면세 대상의 범주

□ 임가공 면세 대상 세금의 종류 및 면세 혜택 적용 가능 납세자

○ 수출입세 면세 혜택

- 수출입세법 제 16조에 따라 해외 상인을 위한 임가공 계약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 등에 대해 수입세 면세 혜택 부여.
- 면세 적용 시 임가공 수탁자 직수입 외에도 외주 임가공 수탁자가 수입하는 경우 까지 면세 혜택 부여.
- 베트남은 수출 시에 부과되는 수출세 제도가 존재하는 바, 임가공 완료 후 수출되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세 면세 혜택 부여.

○ 부가세 면세 혜택

- 2008년 부가세법에 따라 생산 계약 혹은 해외 계약자와의 수출 가공 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생산, 가공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적용 제외.

◆ 임가공에 따른 수출입세 면세 가능 경우 (참고) ◆

1. 적용 대상 수입의 범주

임가공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수출입 세법 시행령 10조 2항에서 다루고 있다. 기존에는 외국 상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임가공 업자가 재외주를 주는 경우에 대한 면세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2021년도 수출입 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재외주가공의 경우에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다. 수출입 면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1)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납세자

: 상법 시행령에 합치하는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납세자는 임가공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공급받거나, 원재료를 조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임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납세자는 세관신고서 상에 임가공 계약 및 계약서 부록 접수 번호를 기재해서 신고해야 한다.

2) 납세자 혹은 납세자에 의해 고용된 외주 임가공 업자

: 임가공 형태 중 “Gia công lại”라고 표현되는 재임가공, 혹은 외주임가공 형태는 기존에 체결된 임가공 계약에 따른 완제품의 제조를 위해 임가공 위탁자가 다른 업자를 고용하여 임가공 공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 계약의 임가공 수탁자는 외주 임가공을 주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외주 임가공업자에 대해서도 생산 시설 및 임가공 계약 등록 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3) 내국 수출을 위해 임가공하는 업자

: 내국수출과 내국 수입은 베트남에서 규정하는 독특한 제도로, 베트남 국내에서의 물품 이동에 대해서도 수출, 수입 신고가 가능한 총 3가지 경우를 의미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 4절의 내용을 참고. 이러한 내국 수출을 위한 상품 임가공을 위해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도 수입세 면세가 규정되었다.

2. 적용 대상 수출의 범주

임가공 완제품의 수출에 있어, 2016년도 수출입세법 시행령의 경우 단순히 “수출” 임가공 제품에 대한 면세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년도 개정 수출입 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수출”의 범주에 “내국수출”의 범주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세 면세 대상 완제품의 범주를 넓게 규정하였다. 따라서 단순 해외로의 수출 뿐 아니라, 비관세 구역 및 국내에서 내국 수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출세가 면세됨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 해외로 수출되는 임가공 완제품
- 2) 비관세구역으로 반출되는 임가공 완제품
- 3) 임가공위탁자 지시로 베트남 기관 및 개인에게 내국 수출되는 임가공 완제품

□ 임가공 면세 대상 물품의 범주

- 수출입세법에 따라 임가공 후 수출되는 수출 상품 및 임가공 목적으로 수입되는 원재료, 소모품, 부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세 면세 혜택 적용 가능.

○ 수입세 면세 대상 임가공 목적 수입 물품

1. 원재료, 반제품, 소모품, 부자재

- 이들은 직접적으로 수출용 완제품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 및 수출 물품의 일부가 되진 않으나 공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포함.
- 임가공 수탁자가 임가공 계약을 위해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 물자, 부자재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 제공.

2. 완제품

- 베트남에서 별도의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임가공 상품에 부착되기 위하여 수입되는 완제품 및 수출 완제품과 세트 상품 구성을 위해 수입되는 완제품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제공.
- 수입되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임가공 계약서나 그 부록에 명시 필요, 형태는 완제품임에도 관리에 있어서는 임가공용 수입 원재료 및 물자처럼 관리 필요.

3. 포장재료

- 수입되는 물자의 범주에는 포장재를 만들기 위한 소모품 혹은 수출물품 포장을 위한 포장재 자체가 포함.

4. 샘플

- 판매, 소비를 위한 목적이 아닌 샘플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한 수입세 면세 대상.

5. 기계, 설비

- 임가공 계약서 상에 합의된 임가공 이행을 위한 수입 기계, 설비로써 임가공 위탁자가 임가공 수탁자에게 유상 임대 혹은 무상 임대를 한 경우 면세 혜택 적용.
- 기계, 설비의 수입 절차 이행 시 세관 절차 및 검사에 대한 시행규칙 상 생산, 시공 및 프로젝트 이행, 시범을 위한 기계, 설비, 금형 등의 일시 수입 및 재수출의 절차를 준용.

- 면세 기계, 설비의 경우 임가공 계약이 끝난 후 적절한 처리 필요. 임가공 위탁자가 해당 기계 및 설비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 다른 계약자와의 거래를 통해 국내에서 처리하는 경우, 임가공 위탁자의 위임을 받은 수탁자는 국내에서의 내국 수출 절차 이행 필요.

6. 수출 상품의 품질 보장, 수리를 위한 부자재(Linh kiện), 부속품(phụ tùng)

- 임가공된 완제품의 수출 시, 물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여분으로 추가되는 부자재 등을 의미.
- 이러한 부자재에 대해서도 임가공 계약서나 그 부록에 명시되어야 하며, 임가공용 수입 원재료 및 물자처럼 관리 필요.

7. 폐기물, 폐품

- 임가공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 수출 임가공 완제품, 임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및 폐품의 경우 세관 법령에 따라 폐기 허가를 받고 실제 폐기된 경우, 수입세 면세 대상.

○ 임가공된 완제품의 수출세 면세 여부

- 임가공 후 완제품의 수출 시 면세 가능한 수출세의 범주는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

1. 완제품 생산 시 전체를 수입 원재료로 제조한 경우

- 수출세 전체 면세

2. 원재료 일부가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공급된 원재료가 수출세 대상인 경우

- 완제품 중 해당 내수 원재료, 물자의 가치 해당 비율만큼 수출세 부과, 이때 적용 세율은 원재료 및 물자에 부과되는 세율을 따른다.

□ 외주 임가공에 대한 면세 여부

○ 외주 임가공의 의의

- 임가공 계약 이행 시, 하나의 임가공(Gia công) 계약의 전체 공정을 하나의 수탁자가 모두 이행하는 경우가 일반적.
- 공정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하나의 임가공 계약 내에서 일부 공정을 다른 당사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발생. 이러한 외주 임가공 형태를 “Gia công lại”라고 명칭.

* 수입한 원자재를 다른 당사자에게 외주 임가공을 맡기는 경우, 기존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외주 임가공을 주는 자체가 “수출”로써 볼 수 없는 행위이기에 면세 혜택에 대한 회수 대상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 존재. 2021년 수출입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주 임가공 형태에 대해서도 수입 원자재에 대한 면세 혜택 인정

○ 외주 임가공 면세 대상

- 외주 임가공을 주는 경우, 1. 2.의 경우 면세 혜택 적용 가능.
 1. 원래의 임가공 계약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일부 혹은 전부
 2. 원래의 임가공 계약 이행을 위해 수입된 물품으로 일부 가공된 반제품
- 외주 임가공 작업을 거친 물품은 가공이 완료된 후 다시 회수(nhận lại) 필요. 회수한 후 즉시 수출 혹은 추가 가공 절차 후 수출 진행.

○ 외주 임가공 적용 시 이행 필요 조건

- 외주 임가공을 주는 경우, 아래와 같이 생산 시설 및 계약 등록 절차 이행필요
 1. 외주 임가공업자는 베트남 영토 내에 수출 물품 임가공을 위한 생산시설 및 기계,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임가공 시설과 외주 임가공 시설 및 임가공 계약 및 계약서 부록, 외주 임가공 계약서 및 계약서 부록에 대한 세관 통보가 있어야 한다.
 3. 만일 납세자가 외주 임가공 시설 및 외주 임가공 계약에 대한 통보 의무를 정해진 시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세 행정 위반 행위로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외주 임가공 경우별 면세 절차 (2687호 공문) ◆

2021년도 수출입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외주 임가공 면세 등의 실제적인 적용과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해 2687호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베트남 국내로 외주 임가공 위탁 시

1) 거래 상황

- 69/2018/ND-CP 규정에 따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납세자가 임가공 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 국내 다른 당사자를 고용해 기존에 수입한 임가공용 원재료의 일부나 전부, 혹은 수입 물품으로 가공된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인도되는 물품(외주 임가공의 원재료)에 대한 수입세 면세 가능.

2) 세관 절차

- 이 때 외주 임가공의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가 국내 기업이라면, 별도의 세관 절차 이행의 필요는 없으나 원재료의 인도와 제품 회수 과정과 관련한 회계자료의 보관 필요.

2. 비관세구역 혹은 외국으로 외주 임가공 위탁 시

1) 거래 상황

- 임가공 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이행하기 위해 비관세구역이나 외국에 위치한 기업 및 개인을 고용, 수입한 물품 일부나 전부, 혹은 수입 물품에서 가공된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인도되는 물품(외주 임가공의 원재료)에 대한 수출세 면세가능.
- 그러나 외주 임가공 시 수출세를 면세받은 물품의 외주 임가공 절차 이후,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 혹은 비관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제품(외주 임가공 완료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세 납부가 필요하다.

2) 세관 절차

- 외주 임가공 수탁자가 EPE 기업인 경우, 세관법 시행규칙 제 76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해당 조항에 의거 시, 수탁자인 EPE 기업은 원재료의 수취 및 임가공 물품의 발송 시 별도의 세관 절차 이행의 필요가 없으나, 임가공을 위탁한 국내 기업의 경우는 세관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이 때 수출입 신고서 상 기업 내부 관리 번호에 대해 기재가 필요하다.

제4절 임가공 계약의 청산 절차

□ 임가공 계약 종료 후의 관리 책임 및 절차

○ 임가공 계약 청산의 원칙

- 임가공 계약이 종료되거나 시효 만료 시, 양 당사자는 계약의 청산(thanh lý) 절차 및 원재료, 물자, 수출 상품의 사용 보고 (수책관리) 의무 이행 필요.
- 수입세 면세를 받은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임가공 계약이 끝난 후 남은 잉여 원자재의 경우 처리에 있어 유의 필요. 다수의 기업 수책심사 과정에서 폐기물 등의 처리에 있어 추정 사유 발생.
- 수출입 세법 상 면세 대상 기계, 장비 또한 계약 종료 후에는 적절한 처리 필요.

○ 임가공 계약 처리 방안 및 절차

-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가공 계약이 종료된 날 혹은 효력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재료 및 잉여 물품/ 폐기물과 폐품/ 유상 대여 및 무상 대여된 기계, 설비에 대한 처리 필요. 기간 경과 시 정산 절차를 관할 세관 지국의 행정 위반 처벌 대상.
- 원재료 등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베트남 국내 시장으로의 판매
2. 베트남에서 선물, 증여 처리
3. 베트남에서 다른 임가공 계약 이행을 위해 전달
4. 반환을 위한 해외 수출
5. 베트남에서 폐기

○ 처리 방식별 면세 유지 여부 및 상세 절차

- 임가공과 관련 물품 처리 방안 선택 시 기존의 면세 혜택에 대한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 후, 필요 시 관련 세금 납부 의무 이행 필요.

* 1) ~5) 의 경우별 상세 내용 아래 표 참조

◆ **임가공 물품 청산 절차 상세** ◆

1.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판매, 혹은 선물, 증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을 제외하고, 남은 원자재와 유상대여 및 무상 대여한 기계나 장비의 경우 수출로써 처리하기보다, 베트남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대상에게 판매 혹은 증여로써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면세를 받은 기존의 사용 용도에 변화가 생기는 부분이기때문에, 세관 절차 이행 및 관련 세액 납부 과정의 이행이 필요하다.

만일 원자재와 기계, 장비를 **기존 임가공 계약의 수탁자**가 구매하거나 증여받는 경우, 물품을 받는 수탁자는 면세 적용을 받은 부분에 대해 “목적 변경” 신고를 하여 국내 사용 목적으로 변경 후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 수입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이며, 만일 선물, 증여용 물품에 대해 수입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 금액 범주 내에서는 수출입 세법 시행령 상 면세 대상이 된다.

만일 원자재, 기계, 장비를 **베트남 내의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 선물, 증여 처리 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해 베트남의 독특한 제도인 “내국수출입”제도로써 처리해야 한다. 이 때 임가공 수탁자는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양도되는 물품에 대해 내국 수출 신고를, 이에 대응하여 물품을 양수받는 자는 내국 수입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이 때 내국 수입 신고 시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수입세 납부가 필요하다.

2. 베트남 국내에서 다른 임가공 수탁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임가공 계약 종료, 거래처 변경 등으로, 기존의 수탁자로부터 다른 수탁자에게로 임가공 계약 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임가공 절차는 베트남에서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기에 남은 원자재 및 기계, 장비 등이 국내에서 다른 임가공 계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국 수출입 신고 대상이며, 원자재 및 기계, 장비를 전달받는 새로운 임가공 수탁자의 경우, 내국 수입 과정에서 임가공용 원재료 및 기계, 장비로써 수입세 면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3. 해외 임가공 위탁자에게 반환을 위한 수출 시

원자재나 물자, 기계와 장비 뿐 아니라 폐기물 및 폐품도 해외로의 반환을 위한 수출로써 처리가 가능하며, 이 때에는 관련 수출세 면세 대상이 된다. 수출 시에 임가공 수탁자는 세관에 수출 신고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4. 폐기 처리

수출입 세법 개정안에 따라, 임가공을 위해 수입된 물품은 베트남에서 폐기 승인을 받고 실제 폐기되면 수출입세 면세 대상이 된다. 참고로, 기존 수출입세법 시행령에서 폐기물, 폐품 및 임가공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 및 물자의 잉여분으로 수입 총수량 대비 3%를 넘지 않는 만큼에 대한 국내 소비에 대해서는 수입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3% 관련 규정은 2021년 수출입 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삭제되었다.

폐기 대상 원재료, 물자, 기계, 장비, 폐기물, 폐품에 대해서는 우선 수입지 지국 세관에 폐기 장소와 방법에 대해 명시한 폐기안을 송부한 후, 자원환경보호법 상 규정에 따라 폐기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세관은 폐기 절차에 대한 검사를 이행해야 하나, AEO 지정 업체의 경우는 검사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검사 방식에 있어, 폐기물 및 폐품에 대해서는 위험관리 규칙에 따라서 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원재료, 물자, 기계, 장비에 대해선 직접 참여 검사 방식이 원칙이다. 그러나 폐기대상 물품의 가치가 1,000,000동 미만 혹은 대상 세액이 50,000동 미만인 경우에는 직접 참여 검사 대상 에서 제외하며, 직접 검사 후에는 양 당사자가 함께 폐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Ⅲ. 수출가공기업제도 의의 및 활용

제1절 수출가공기업의 의의 및 혜택

□ EPE 기업의 정의

○ 비관세구역으로 간주되는 베트남 고유의 제도

- 수출가공기업 제도는 베트남어로는 Doanh nghiệp chế xuất, DNCX 라고 축약하여 표현하며 영어로는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로 표현되어, 우리 기업들은 흔히 “EPE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
- 산업공단 및 경제구역 관리에 관한 시행령 (35/2022/ND-CP)에서 수출가공기업을 “수출가공구역(EPE구역), 산업공단 혹은 경제구역에서 수출 가공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정. 2022년 5월 기준, 약 1670 개 수출가공기업이 활동 중으로 집계.
- 수출 가공 기업은 특정 구역 내에서 수출을 위한 상품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세관의 EPE 기업 검사 및 감찰 요건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투자부 확인을 받아 투자 등록증 상 EPE 설립 목적이 기재 되어야 EPE 혜택 수혜.
- EPE 기업으로써 설립된 경우 비관세구역에 적용되는 투자 혜택 및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베트남을 생산 허브로 삼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유용.

◆ 비관세구역(khu phi thuế quan, FTZ) ◆

베트남 영토 내에 위치한 경제 구역으로써,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의 기능을 하는 구역. 외국 물품이 들어올 때는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영토 내 특정 장소에 물품이 위치되어야 하는 바, 통관 절차를 이행하기 전 물품들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를 보세구역이라 한다. 해당 구역의 물품은 관세 납부가 유보된 상태이다.

베트남 수출입 세법에 따르면, 비관세구역이란 베트남 영토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명확한 외부와의 경계를 두고 분리된 구역이다. 경계를 짓는 펜스에는 출입문을 두어 해당 경계를 통과하는 운송수단, 사람, 물품의 반출과 반입에 대한 세관의 물품 검사, 감찰, 관리 활동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비관세구역의 큰 특징으로는 해당 구역과 외부 베트남 영토 간의 물품 이동을 수출과 수입으로 간주한다는 점이 있겠다.

□ EPE 기업의 혜택

- EPE 기업에 대한 수출입세, 부가세, 법인세 혜택, 토지사용료 등의 혜택 중, 법인의 물품 수출입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수출입세 및 부가세 혜택은 다음과 같음.

○ EPE 기업 수출입세 혜택

1. 수출입세 부과 제외 대상

- EPE기업은 비관세 구역에 적용되는 투자 혜택 및 세금 혜택 적용 가능.
- 수출입 세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수출입세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
 - 1) 비관세구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
 - 2) 해외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비관세구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 3) 비관세구역에서 다른 비관세구역으로 옮겨지는 물품
- 비관세 구역으로 간주되는 EPE 기업의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세 및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 EPE 기업간 이동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 EPE 기업은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출입세 납부 부담 없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점 존재. 추가적으로 EPE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물품은 베트남 영토에서 소비되는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아, 수입세 대상 제외.

2. 수출입세 부과 대상

- EPE 기업과 관련된 거래 형태 중 다음의 경우는 수출입세 납부 필요.
 - 1) 국내에서 EPE기업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수출세
 - 2) EPE기업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의 수입세
 - 3) EPE기업이 가진 수출권, 수입권 및 유통권 이행을 위해 수출 및 수입하는 물품. 즉, EPE 기업이 수출 제조 활동이 아닌 별도로 등록한 업체로 이행하는 일반적인 수출, 수입 및 유통을 위한 경우

○ EPE 기업 부가세 혜택

- 부가세법 시행 규칙에 따라, 비관세 구역과 외국 간에 판매 되는 물품 및 서비스 / 비관세 구역 내에서 거래되는 물품 및 서비스는 부가세 제외 대상.
- 따라서 EPE 기업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 및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 제외 대상. 다만 세관 신고 절차를 통해 부가세 제외 대상임에 대한 신고 필요.
- 다음의 활동에 대해서는 부가세율 0% 혜택 적용.
 1.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 활동
 2. 해외 및 비관세구역에서의 건설 활동 및 조립 활동
 - * 1. 의 수출되는 물품과 서비스란, 해외의 기관 및 개인에 판매되는 물품으로써 베트남이 아닌 곳에서 소비되는 것 혹은 판매된 후 비관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트남 국내에서 EPE기업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출 시 부가세 0%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판매 혹은 임가공 계약서나 수출위탁 계약서, 은행을 통한 지급 증빙 및 세관 수출입 신고 서류가 있어야 한다.
- 부가세율 0%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수출 상품 및 서비스가 있으며, 그 중 상품의 범주에는 다음의 리스트를 참고.

◆ 부가세율 0% 적용 제외 대상 ◆

- 수출 상품이 천연자원, 광물로써 다른 상품으로 제조되기 전의 것
- 수입된 담배, 술, 맥주로써 수출되는 경우
- 비관세구역에서 경영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공급되는 상품
- 비관세구역 내의 개인 및 기관에게 판매되는 자동차 및 차량용 기름 등
- 제외되는 서비스는 다음의 리스트를 참고한다.
- 비관세구역에 있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주택, 회의장, 사무실, 호텔, 창고 임대 용역
- 노동자 이동 용역
- 우편 및 통신 서비스

제2절 수출가공기업의 조건

□ EPE 기업의 위치 조건

- EPE 기업은 산업공단과 수출가공구역, 경제 구역 위치 필요.
 - EPE기업이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정의에 따라 수출가공구역, 산업공단 혹은 경제구역으로, 시행령에 따라 각 구역의 정의는 다음의 리스트 참고.

◆ 산업공단, 경제구역, 수출가공구역 ◆

1. 산업공단 (Industrial park, khu công nghiệp)

산업공단은 명확한 경계를 두고 설치된 지역으로 공업 물품 생산 및 생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화된 지역을 의미한다.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국내 성시급 행정단위 도시계획에 포함된 산업공단은 총 563개로, 실제 운영 중인 곳은 총 292개, 그 외 건설 완료 후 운영 대기중인 곳(292개) 및 건설 중인 공단 (10 개)가 있다.

대표적인 산업 공단으로는 하노이의 푸응이아 공단 (Khu công nghiệp Phú Nghĩa), 빈푹성의 빈쑤이엔 공단 (Khu công nghiệp Bình Xuyên), 박닌의 남선-합린 공단 (Khu công nghiệp Nam Sơn-Hạp Lĩnh), 띠이닝성의 프억동 공단 (Khu công nghiệp Phước Đông), 빈딘성의 사이공-년호이 공단(Khu công nghiệp Sài Gòn - Nhơn Hội), 빈즈엉성의 미프억3 공단 (Khu công nghiệp Mỹ phước 3), 호치민의 떤푸쭙 공단(Khu công nghiệp Tân Phú Trung) 등이 있다.

2. 수출가공구역 (EPE 구역, Export processing zone, Khu chế xuất)

산업 공단 중에서도 특별히 수출 물품의 제조 혹은 수출물품 제조 서비스 제공을 전문적으로 하는 산업공단을 수출 가공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출 가공구역의 경우 수출 입세법 상 비관세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외부와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대표적인 수출 가공 구역으로 호치민의 떤투언 수출 가공구 (KCX Tân Thuận), 린쭙 1, 2, 3 수출가공구(KCX Linh Trung I, KCX Linh Trung II, KCX Linh Trung III), 동나이의 롱타인 수출 가공구(KCN công nghệ cao - CX Long Thành)가 있다.

3. 경제구역(Economic zone, Khu kinh tế)

경제구역은 지정학적 경계에 설치된 장소로써, 투자 유치, 사회경제적 발전, 국방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기능 구역으로 구성된 구역이다. 경제 구역에는 해안지역 및 그 인접지역과 항만을 포함한 해안경제구역 (18곳) 및 내륙 국경 경제구역 및 인접지역에 형성되는 국경경제구역 (26곳)이 있다.

□ EPE 기업의 외부와의 분리 및 세관 감사 요건

○ 비관세구역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외부와의 분리 필요

- 산업공단 및 경제구역 관리에 관한 시행령 (35/2022/ND-CP)에 따라 산업 공단 내에는 EPE 기업을 위한 구역 별도로 구비 가능.

- 산업 공단 내의 EPE 기업을 위한 구역 및 수출가공구역(EPE구역) 및 EPE 기업은 울타리, 입구, 출입문을 갖추어 베트남 외부 영토와 분리 필요. 또한 비관세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세관 당국 및 관련 기관의 검사, 감독 및 통제 조건 충족 필요.

- 외부 분리 요건 및 세관 감사 요건에 대해서 EPE 등록 전 세관의 확인 절차 필요.

○ 외부와의 분리 요건 및 세관 감사 요건에 대한 기준

- EPE기업으로 신규 등록 및 전환 전, 기업은 외부와의 분리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에 대한 점검 필요.

- 이러한 분리 요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령이 없어 기업 애로의 원인이 되었으나 2021년 개정 수출입세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기준 제시.

◆ EPE 기업 신규 준수 요건 ◆

1. EPE 기업의 구내와 외부를 구분하는 장벽을 갖추고, EPE기업의 구내로 출입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써의 게이트 / 문을 갖추어 것

해당 조건이 발표된 후, 수출 가공 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 EPE 기업이더라도, 다른 EPE 기업과 분리되는 울타리/장벽/게이트를 갖추어야 하는지가 이슈가 되었다. 관세총국의 공문에 따르면, EPE 기업이 수출 가공 구역이나 공단 혹은 경제구역 내의 EPE 기업을 위한 구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울타리나 문이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해당 구역 전체가 외부와의 울타리/장벽을 통해 외부와 구분이 된다면 조건 충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시 카메라 설치, 소프트웨어 구비 조건은 개별 기업별로 갖춰져야 한다.

다만 Epe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수출 가공 구역, EPE 기업을 위한 구역 내에 다른 일반 기업(Non-EPE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라면 EPE 기업 각각은 개별로 울타리/장벽

을 갖춰야 하며 개별 문/게이트를 통한 출입을 해야 한다.

2. EPE 구역 물품이 입출고되는 출입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것, 감시 카메라는 휴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작동되어야 하며, 감시 카메라 녹화물은 관할 세관 지국에 전송되어야 한다. 해당 영상 기록은 12개월간 보존되어야 한다.

이 때, 관세총국의 공문에 따르면, 카메라 설치 장소 대상은 물품이 보관되는 곳으로써, 원재료, 물자, 반제품, 완제품 및 장비와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닌 물품들이 보관되는 창고 및 보관소가 대상이다. EPE 내부 장소 중에서 제조 및 물품의 사용을 위한 공장, 사무소, 식당은 카메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관세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입품의 입고, 반출, 재고, 사용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한 EPE 면세 재고 물품 관리 소프트웨어를 보유할 것

□ EPE 기업의 입고-반출-재고 관리 의무

○ EPE 기업 주기적 수책 보고 필요

- 수출입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가공 기업, 수출제조 기업, EPE 기업은 물품의 입고, 출고 및 보관 상황에 대해 보고 필요 (Báo Cáo quyết toán, 흔히 수책관리/수책보고/정산절차 등으로 지칭).
- EPE 로 등록된 기업에게 있어 수책 보고 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많은 추정 사례가 발생, EPE 전환 준비 기업은 이러한 수책 관리에 대한 사전 프로세스 및 관리 소프트웨어 등 구비 필요.

◆ EPE 기업 수책 보고 관련 개관 ◆

1. 수책 보고 기한 및 장소

수책 보고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생산시설 보고를 한 관할 세관지국에 이행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 기한 초과 시 법률 위반 기록 발행 및 영업장 현장 검사, 향후 수출입 신고 건에 대한 검사 실시 등 법적 조치 대상이 된다.

2. 수책 보고 사항

수출입세법시행령 부록 2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일반 사항

: 보고일자, 보고 대상 세관 및 보고 기업의 이름, 주소 등과 원재료 및 상품의 기초 재고 및 기말 재고

2) 원재료 및 물자의 입고 관련 정보 및 출고 관련 정보

: 입출고 일자 및 입출고표 현황 및 원재료별 코드, 입출고 수량, 단가 정보 등과 함께 출고 원재료의 경우 출고 사유 기재가 필요하다. 출고 사유란 출고표 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관련 계약서 번호, 부가세 영수증 번호 등을 의미한다.

3) 수출용 상품 입출고 관련 정보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후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상품을 수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가 있다면, 상품 입출고 일자 및 입출고표 현황, 수출용 상품의 코드, 입출고 수량, 단가 정보 등에 대한 제공이 필요하다.

4) 각 완제품 코드별 원재료 및 물자 소요량 정보

: 수출, 수입 상품의 코드 및 이름과 수량 단위, 사용된 원재료 코드 및 이름과 수량 단위와 함께 완제품 구성 원재료 및 물자의 소요량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이 때 기업은 예상 소요량 정보 혹은 실제 소요량 정보 중 선택하여 보고가 가능하다.

제3절 수출가공기업의 설립

□ 설립 절차 개요

- EPE 기업 등록을 위해서는 외부 분리 및 세관 감시 요건 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업의 투자 등록증 상에 EPE 기업 설립 목적 기재를 위한 투자등록 기관에 신청 절차 필요
- 기존에는 EPE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외부와의 분리 요건이 2021년 수출입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EPE 설립 조건에 대한 내용이 세부화 됨.
- 해당 설립 조건은 신규로 EPE를 설립하려는 기업 뿐 아니라, EPE로의 전환을 원하는 일반 기업, 해당 시행령의 개정 전에도 EPE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 모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경우에 따라 절차 확인 필요
- 신규 투자 프로젝트와 동시에 EPE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
 - 신규 투자자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 설립 및 투자 라이선스를 모두 받고나서, 공장 생산활동을 개시하기 전, EPE 라이선스 취득 필요
 - EPE 라이선스 발급 기관은 세관으로부터 기업의 세관 검사, 감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충족 시에만 EPE 라이선스 취득 가능
- 기존 투자 프로젝트를 EPE로 전환
 - 기존 투자 허가증 외에 EPE 라이선스 추가 취득 필요
 - 동일하게 EPE 라이선스 발급 기관에 신청이 필요하며, 세관 검사, 감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 이미 EPE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
 - 21년도 수출입 세법 시행령 상 외부와의 분리 및 세관 감시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 전에 EPE로 설립한 기업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감시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물을 마련하게끔 규정

□ EPE 기업 설립 절차 상세

- EPE 기업을 신규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투자 등록증 발급이 필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절차 및 EPE 라이선스 발급 절차 다음과 같음.

1. IRC 발급

베트남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법인을 세우기 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따라서, 신규 법인 설립 절차에 있어 먼저 투자 등록증(IRC) 발급 후 기업등록증(ERC) 발급을 받은 후에 공장 설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투자법에서 규정하는 투자 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đầu tư, IRC)의 발급 관할 기관은 산업 공단 및 수출 가공 구역의 관리위원회이며, 투자 프로젝트의 명칭 및 이행 장소, 투자의 목적 및 규모, 자본금 수준 등이 기재된다.

투자 등록증 발급 시에는 투자 프로젝트 실행허가 신청서, 투자자 재정능력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과 함께 투자의 목적, 규모 등 투자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담긴 투자 제안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충분한 서류 제출 시 15일 내에 투자 등록증 발급이 이뤄진다.

2. ERC 발급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투자자는 기업 본점 소재지의 기획투자국에 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등록증 상에는 기업의 사호, 연락처, 정관자본금,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 종류 및 액면가, 세무 등록 정보, 근로자수, 대표자에 대한 정보 등이 기재된다.

3. 조건부 라이선스 발급 및 사후 절차

투자등록증 및 기업 등록증 발급 이후에는 기업 인감 신고, 정관자본금 납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임시거주증 취득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 등록증 및 기업등록증을 발급받고 난 후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은 업종에 따라 조건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국내에서의 소매 유통업을 들 수 있겠으며, 해당 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지역 산업무역국에 신청을 통해 별도의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한다.

4. EPE 기업에 대한 세관 검사, 감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산업공단 및 경제구역 관리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EPE기업의 설립 혹은 일반 기업에서 EPE기업을 전환하는 경우 기업은 세관의 검사, 감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EPE 설립을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투자 등록 절차 시 사전에 확약서 제출 및 세관 확인을 받은 후, 공장 설립 및 생산 가동 전에 현장 실사(kiểm tra thực tế)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가동을 하던 일반 기업에서 EPE로 전환 시에는 확약서 제출 당시 세관 실사를 통해 EPE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두 경우 모두, 세관의 조건 충족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EPE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 EPE 기업 세관 감시 요건 확인 절차 ◆

1. 투자 등록 절차와 EPE 설립을 동시에 하는 경우

- 1) EPE 설립 기업은 세관 검사, 감시 요건 충족 확약서(Bàn cam kết, commitment)를 투자등록증 발급 서류를 함께 투자 등록 기관(EPE 기업의 경우 공단 및 수출 가공 구역 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 확약서는 수출입세법 시행령 부록 7의 24번 양식으로, 투자자가 정식 활동을 하기 최소 30일 전에는 세관의 검사 및 감시 요건을 충족할 것에 대해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업의 확약서를 의미한다.
- 2) 서류를 접수받은 투자 등록 기관은 관련 세관지국에 투자자의 신청서류와 함께 세관의 검사 및 감시 요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 3) 투자등록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받고나서 3영업일 이내에 세관 지국은 신청서 등 검토 후, 세관의 검사 및 감시 요건 충족 확약서에 확인을 하고 투자 등록기관에 재송부한다.
- 4) 이 경우 투자 등록증 발급 기관은 투자 등록증 상에 EPE 설립 목적을 기재하여 발급한다.
- 5) 기업은 실제 생산 활동을 하기 최소 30일 전에 부록 7의 25번 양식을 통해 세관 검사, 감시 요건 충족을 하였음에 대해 통보서를 관할 세관 지국으로 송부한다.
- 6) 기업의 통보서를 받고 최대 10영업일 내에 관할 지국세관은 현장 검사 진행 후 부록 7의 26번 양식에 따른 최종 확인서를 기업으로 송부한다. 만일 최종 확인서 상 조건 미충족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기업은 1년 내에 조건 충족 이행을 위한 조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
- 7) 만일 1년 내에 조건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수출입세법 상 세제 혜택을 수혜받을 수 없으며, 세제 혜택을 받은 면세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세

및 가산세, 가산 이자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그 이후에 세관으로부터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는다면, 조건 충족 확인서를 세관에서 받는 날로부터 세제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다.

2. 일반 기업에서 EPE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1) 기업은 EPE 기업이 위치하는곳의 투자등록기관에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와 세관 약속서를 제출한다.
- 2) 투자자의 요청을 받은 투자등록기관은 관련 세관에 세관의 검사 및 감시 요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 3) 세관은 투자등록기관에서 서류를 받고 최대 10영업일 내에 현장 검사 이행 책임이 있으며,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결과를 부록 7의 26번 양식을 통해 투자 등록 기관으로 송부해야 한다.
- 4) 만일 3)의 과정에서 조건에 대해 불충족하다는 결과를 수신받은 기업의 경우, 1.과 동일하게 1년 내에 재검사를 통해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받아야 한다.

<p>TÊN NHÀ ĐẦU TƯ -----</p>	<p>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p>
<p>....., ngày ... tháng ... năm...</p>	
<p>BẢN CAM KẾT</p>	
<p>Về khả năng đáp ứng điều kiện kiểm tra, giám sát hải quan đối với khu phi thuế quan là doanh nghiệp chế xuất</p>	
<p>I. Thông tin về nhà đầu tư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ư đăng ký là doanh nghiệp chế xuất</p>	
<p>1. Tên nhà đầu tư:...</p>	
<p>2. Địa chỉ: ...</p>	
<p>3. Thời điểm dự án dự kiến đi vào hoạt động:...</p>	
<p>II. Nội dung cam kết</p>	
<p>Chúng tôi xin cam kết về khả năng đáp ứng đủ các điều kiện kiểm tra, giám sát của cơ quan hải quan đối với doanh nghiệp chế xuất chậm nhất 30 ngày trước thời điểm doanh nghiệp chính thức đi vào hoạt động, cụ thể như sau:</p>	
<p>1. Có hàng rào cứng ngăn cách với khu vực bên ngoài; có cổng/cửa ra, vào đảm bảo việc đưa hàng hóa ra, vào doanh nghiệp chế xuất chỉ qua cổng/cửa.</p>	
<p>2. Có hệ thống ca-mê-ra quan sát được các vị trí tại cổng/cửa ra, vào và các vị trí lưu giữ hàng hóa ở tất cả các thời điểm trong ngày (24/24 giờ, bao gồm cả ngày nghỉ, ngày lễ); dữ liệu hình ảnh ca-mê-ra được kết nối trực tuyến với cơ quan hải quan quản lý doanh nghiệp và được lưu giữ tại doanh nghiệp chế xuất tối thiểu 12 tháng.</p>	
<p>3. Có phần mềm quản lý hàng hóa nhập khẩu thuộc đối tượng không chịu thuế của doanh nghiệp chế xuất để báo cáo quyết toán nhập - xuất - tồn về tình hình sử dụng hàng hóa nhập khẩu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về hải quan.</p>	
<p>Chúng tôi xin cam đoan và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nội dung nêu trên./.</p>	
<p>XÁC NHẬN CỦA CƠ QUAN HẢI QUAN</p>	<p>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NHÀ ĐẦU TƯ (Ký, ghi rõ họ tên, đóng dấu)</p>

[부록 7, 양식 24. 세관 검사, 감시 요건 충족 약속서 양식(Bản cam kết, commitment)]

제4절 수출가공기업의 신고 실무

- EPE 기업은 반출입하는 물품의 형태에 따라 적절한 신고 유형으로 신고되어야 하며, 신고 유형 오류는 수책 보고 및 세관 감사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EPE 기업으로 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가 이행되어야 하나,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 절차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존재

□ 원재료 및 소모품의 입고 절차

○ 임가공 활동을 위한 원재료, 소모품의 해외 및 국내 조달

- 원재료 및 소모품에 대해 세관 수입 절차 이행 및 신고 목적에 맞게 생산 용도로써 사용 필요. 경우에 따른 신고 상세는 아래 리스트 참고.

◆ EPE 기업 임가공용 원재료 등 입고 절차 ◆

1 해외에서 EPE로 수입되는 원재료 및 소모품

A의 경우는 비관세구역으로의 반입으로 보기에 수입 신고 시 수입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래유형 “E11”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2. 베트남 국내에서 EPE로 수입하는 원재료 및 소모품

B의 경우 현행 관세법 상 “내국 수입” 물품에 해당한다. 수입자인 EPE 기업 입장에서는 비관세구역으로의 반입으로 보아 수입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거래유형 “E15”로 신고할 수 있다.

이 때, 원재료 및 소모품 공급을 하는 베트남 국내 기업에서는 EPE 기업을 대상으로 내국 수출 신고 당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 된다. 다만 공급되는 물품이 수출세 대상인 경우에는 납부가 필요하다.

□ EPE 생산 물품의 해외 수출 절차

○ 임가공 완료 후 완제품의 해외 수출

- EPE 기업에서 수출 제조 혹은 임가공 계약에 의거하여 생산된 물품이 해외 공급 되는 경우 EPE 기업의 수출 신고가 이행 필요. 만일 해당 물품이 EPE 기업의 수출 제조 행위가 아닌 임가공 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이라면 수출 신고서 상 관련 임가공 계약서 번호 기재 필요.
- EPE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의 경우 비관세구역에서의 반출에 해당하기에 수출세 부과 제외 대상이며, 이 경우 거래 유형“E42”활용.

□ EPE와 베트남 국내 기업 간 물품 이동

- EPE 기업은 전문적으로 수출 가공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 EPE 기업에서 베트남 국내 기업과의 거래를 하는 경우 다양한 이슈 사항 발생.
- EPE 기업의 국내 기업과의 임가공 활동에 따른 이동인 경우
 - 외국 임가공 위탁(Đặt gia công ở nước ngoài)이란 베트남 국내 기업이 EPE기업에 임가공을 맡기는 경우 혹은 베트남 국내 기업이 FDI 기업에 임가공을 맡기는 경우를 의미.
 - 즉, 하나의 임가공 계약 하에 베트남 국내에서는 EPE 기업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고, EPE 기업으로부터 완제품을 수령. 해당 경우 신고 상세는 아래의 표 참고.

◆ 베트남 기업의 외국 임가공 위탁 형태에 따른 신고 절차 ◆

1. 베트남 -> EPE 기업 원재료 공급 시

현행 법령 상 베트남 국내 기업과 EPE 기업 간의 물품 이동에 대해서는 “내국 수출, 내국 수입”이라는 세관 신고 절차를 거치게끔 하고 있다.

베트남 국내 기업은 EPE 기업으로 원재료 및 임가공 계약 이행을 위한 기계 공급 시 “임가공용 수출 물품에 대한 수출세 면세 혜택(수출입세법 16조 6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원재료에 대해서는 E82,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G61 코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EPE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내국 수입 신고(수입 코드 E15) 를 해야 한다.

2. EPE 기업 -> 베트남 완제품 전달 시

완성 제품을 국내로 공급 시 EPE 기업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내국 수출”로써 신고를 이행하며, E42코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 때 관련되는 임가공 계약서 번호 등에 대한 기재가 필요하다.

완성 제품에 대해 국내 기업은 대응하는 “내국 수입” 신고 이행이 필요하며 E41코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기업 입장에서 완성 제품이 수입세 부과 대상인 경우, 수출된 원재료 등이 완제품을 이루는 가치만큼만 수입세 면세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수입세 납부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한다.

○ EPE 기업의 기타 경영활동에 따른 물품 이동인 경우

1. EPE 기업의 기타 경영활동 권리 및 관리 의무

- 산업 단지 및 경제 구역 관리에 대한 개정 시행령에서 EPE 기업이 투자법 및 기업법 등에 규정에 따라 다른 비즈니스 활동을 이행할 수 있음을 규정
- EPE 기업은 베트남에서 수출 제조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수출 제조 활동 이외에 수입권, 수출권, 유통권 등을 보유하고 수출 제조 이외의 활동 이행을 하는 경우 존재.

- 이 경우 다음과 같이 수출 제조 활동과 그 외 영업활동 간의 분리 조건 충족필요

- 1) 수출 제조 활동을 위한 물품의 보관 장소가 다른 생산 및 경영 활동 위한 물품의 보관 장소가 분리될 것
- 2) 수출 제조 활동과 연관된 소득(doanh thu) 및 비용이 다른 생산 및 경영 활동에서 기인한 것과 완전한 분리
- 3) EPE 기업의 면세 혜택을 받은 자산 및 기계 설비가 다른 생산 및 경영활동에 사용되어선 안된다. 만일 다른 활동에 사용될 경우, EPE 기업은 감면받은 세금 혜택에 대해 반환하여야 한다.

2. EPE 기타 경영활동 시 신고 절차 및 관련 이슈

- 수출입세법 상 EPE 기업이 수출 제조 활동이 아닌 영업 목적의 수입, 수출, 유통 활동을 위해 수출입을 하는 경우 수출입세 부과 대상.
- EPE 기업이 수출 제조나 임가공이 아닌 단순 판매의 개념으로 국내 기업과의 물품 판매 시 수출입신고 이행 및 관련 세금 납부 필요.

◆ EPE 기업의 기타 경영 활동 시 신고 절차 및 유의 사항 ◆

1.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원상태로 베트남 국내로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계약이 아닌 일반 베트남 국내 공급/판매 목적으로 원재료 혹은 상품을 수입하는 EPE 기업은 먼저 사업자 업태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베트남의 경우 외국 인투자기업에 대해 도소매 유통업을 조건부 업종으로 두고 있어, 투자 등록증 및 기업 등록증 발급 이후 별도의 영업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하다. 국내로 공급하는 형태가 이러한 제한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일 국내 공급이 가능한 경우라면, EPE 기업은 공급용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할 당시 수입 신고가 필요하다. 수입 당시에 일반적인 면세 수입 코드인 “E11”이 아닌 “A41, 수입권을 가진 기업의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써 신고 및 수입세 납부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EPE 기업에서 최초로 “E11”로 면세 수입한 원재료라면, 면세 수입된 물품의 국내 소비목적으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세금을 내는 절차(“A42 코드 신고”)를 거친 후에 공급할 수 있겠으며, 면세된 물품을 그대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혜택 받은 추후 관세 및 부가세 추징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이 때 물품을 공급 받는 국내 기업의 경우, 수출입세법 시행 규칙에서는 “해외에서 수입 당시 EPE 기업 적용 혜택을 받지 않는 물품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이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한 물품은 국내 기업으로 이동, 판매 시 세관 신고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EPE 에서 수입 신고를 충분히 이행했다면 내국 수출입 이행 여부는 선택에 달려있으나, 추후 수책 관리를 위해 충분한 증빙 관리가 필요하다.

2. EPE 생산 물품의 베트남 국내 공급

EPE에서 생산된 물품의 베트남 국내 공급의 경우, 현재 법령 상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EPE의 세제 측면에서의 혜택은 수출용 물품을 베트남에서 제조하게끔 수여된 혜택이기에, 그러한 수출 제조를 위한 원재료, 소모품 및 면세 설비 등을 이용해 제조된 물품이 베트남 국내로 공급된다는 측면은 법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2022년 개정된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관리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EPE 기업은 국내 시장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었으나, 2022년 말 하이퐁 세관국에서는 이러한 물품 판매에 대해 EPE 기업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공문을 하이즈엉, 흥옌, 타이빙성 세관지국 등에 송부한 바 있었으며, 해당 시행령이 개정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에 명확한 가이드가 될만한 공문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EPE 면세 시설 및 원재료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추후 세관 감사 등에서 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여지가 매우 큰 부분이기에, 원칙에 따라 별도 업태 등록 및 분리 관리 등의 조건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안일 것이며, 추후 관세총국의 별도의 가이드에 대한 추적이 필요한 부분이다.

□ EPE 기업의 기타 물품 구매 시 신고 절차

- 관세법 시행 규칙에 따라, EPE 로 수출, 수입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경우 수출입 신고 여부를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출입 신고 여부 선택 가능 경우 ◆

a) EPE 기업 간 판매, 무상대여, 유상대여하는 물품 (단, EPE기업에서 다른 EPE기업으로 외주 임가공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 선택에 따라 EPE 기업 간 내국 수출 및 내국 수입 절차를 이행 가능

b) 국내에서 구매하는 건물 건설용 자재, 사무업무 및 행정 목적의 사무용품 및 고용인 및 직원의 일상 생활을 위한 식량, 식품, 일상용품.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이 국내 구매가 아닌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설 자재 등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기타 물품 수입 신고 시, 비관세 구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수입세 부과 제외 대상이나, 일반 원재료 구매 신고와 구분하여 “E13”코드로 신고 되어야 한다.

c) 하나의 EPE 기업 내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혹은 수출가공구역 내의 EPE 기업 간 사용되는 물품

d) 종속회계(dependent accounting, hạch toán phụ thuộc)를 하는 동일 회사 혹은 동일 그룹의 물품

e) 수리 및 보증 또는 검사, 분류, 포장, 재포장과 같은 생산 활동을 위해 EPE 기업이 수령하거나 EPE기업이 발송하는 물품

a)에서 e)에 대해 수출입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EPE 기업은 물품 판매 및 회계 관련 규정에 맞는 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증빙 및 상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세관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물품 반출입의 흐름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구비되지 않은 경우, 면세 원자재의 수량 불일치 부분에 대한 세관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의 유의가 필요하다.

□ EPE 기업 기계, 설비 수입 및 처분

○ EPE 기업의 기계, 설비 수입 시 혜택

- 임가공 계약서를 등록하고 생산을 하는 임가공 수탁자의 경우, 임가공 계약을 위한 수입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수입세 면세 혜택 적용 가능. EPE 기업의 경우 수출 제조를 위해 설립된 비관세 구역으로 간주되기에, 임가공 및 수출 제조 목적의 기계 수입에 대해 수출입세 제외 혜택 적용이 가능
- 기계, 설비 수입 신고 당시 일반적인 원재료 신고와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여 신고 필요, 사용이 완료된 기계, 장비의 처분에 있어서도 유의 필요.

◆ EPE 기업 기계, 설비 수입 신고 절차 ◆

신고 코드는 아래의 경우에 따라 구분된다.

1. 고정 자산 형성을 위한 물품

투자법에 따라 투자 혜택을 받는 당사자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써, 아래의 제품이 해당하며, 비관세 구역에서만 사용되는 공구, 도구, 물품 류에 대한 수입으로써 신고 시에는 “E13” 코드가 적용된다.

- 1) 기계, 설비; 기계 및 설비의 조립 또는 작동을 위한 구성 요소, 부품 및 예비 부품; 기계, 설비 혹은 기계, 설비의 부품, 예비부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 및 소모품
- 2) 투자 프로젝트의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 라인에서 사용되는 특수 차량
- 3)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건설 자재

2. 수입 혹은 리스되는 일시 수입 물품

기간이 한정된 투자 프로젝트에 의거하여 생산, 건설, 조립 설치, 시험 목적으로 일시 수입되는 기계장비, 운송 수단, 건설장비, 주형 등의 경우, G12코드로써 E13 과 구분 신고 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해서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G22코드로 대응 수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EPE 기업이 면세 수입하는 기계, 설비의 경우 사용에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개정 시행령 상 “EPE 기업의 면세 혜택을 받은 자산 및 기계 설비가 다른 생산 및 경영활동에 사용되어선 안된다. 만일 다른 활동에 사용 시, EPE 기업은 감면받은 세금 혜택에 대해 반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만일 EPE 기업에 면세 수입된 기계, 장비를 다른 업종 경영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세관 감사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 EPE 기업 기계, 설비의 처분

- 기계, 장비 중 고정 자산으로써 신고된 물품의 경우는, 감가상각기간이 종료되거나 망가진 경우, 업종 변경 혹은 생산 규모 축소, 신규 설비 도입 등의 사유로써 처분이 필요한 경우, 면세를 받고 수입한 물품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필요.

◆ EPE 기업 기계, 설비 수입 처분 절차 ◆

1.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해외 수출 시 EPE 기업은 세관에 수출 신고 후 청산이 가능하다.

2. 베트남 국내로 판매, 증여하는 경우

EPE 기업은 사용하던 자산 및 물품을 국내 시장으로 판매하여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입 관리 규정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나, 만일 물품이 수출입 시 수입 허가, 인종과 같은 기준 충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EPE 기업은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행이 가능하다.

- 1) EPE 기업에서 용도 변경 신고를 위한 신규 세관 신고 절차 이행. 이 때 처분 대상 기계, 설비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 및 규제에 따른 절차 이행,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EPE 기업에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물품의 경우는 베트남 국내로 판매, 증여 시 별도의 세관 신고를 거칠 필요가 없다.
- 2) EPE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내국 수출 및 내국 수입 신고 절차 이행. 이 때 내국 수입 신고를 이행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내국 수출입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 및 규제에 따른 절차 이행,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3. 베트남 국내에서 폐기 처리 하는 경우

임가공 기업의 폐기 절차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EPE 기업은 지국 세관에 폐기 계획안 송부 후, 세관 검사 및 폐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IV. 내국수출입의 의의와 관련 이슈

- 베트남의 내국수출입 제도는 베트남 내에서의 물품 이동에 대해서도 세관을 통한 수출, 수입 활동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베트남의 독특한 제도에 해당.
- 현재 내국 수출입 제도와 관련하여 관세 총국의 수정, 보완에 대한 제안이 발표되며 베트남에 위치한 진출 기업들 간의 다양한 이슈, 애로 사항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관련 법령 및 관세총국의 공문을 위주로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

□ 내국수출입 의의 및 경우

○ 내국 수출입 관련 법제

- 내국수출입에 관해서는 1998년부터 규제 및 관련 법령 변경이 있었으며, 2015년 베트남 관세법 시행령 08/2015/ND-CP 제 35조 제 1항에서 다음과 같이 국경의 이동이 없는 물품의 이동에 대해서도 수출입으로 간주 는 구체적인 경우 3가지를 규정.

○ 내국 수출입 해당 경우

- 다음과 같이 내국 수출입에 해당하는 3가지의 경우가 존재하며, 베트남 진출 기업들은 해당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옴.
 1. 베트남에서 임가공 의뢰된 물품으로 가공을 의뢰한 외국 단체나 개인이 베트남에 있는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 (제 35조 제 1항 a)
 2. 국내 기업과 EPE 기업 혹은 비관세구역에 있는 기업 간에 판매되는 물품 (제35조 제 1항 b)
 3.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외국 상인(기업, 개인) 간에 판매되는 물품으로, 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기업으로 배송 및 수령되는 물품 (제 35조 제 1항 c)
- 5월 말 베트남 관세총국의 내국 수출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제안 공문을 발표, 해당 공문에 내국 수출입 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대한 제안이 포함,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 참고.

◆ 관세총국 2588호 공문 세부 사항 ◆

관세총국은 내국 수출입 제도에 대해 부총리의 지시에 따른 영향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내국 수출입 제도는 현행 상법, 대외무역관리법, 수출입세법 등 법령과 일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제도로써, 완전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공문 2588호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공문 2588호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경을 제안하고 있다.

- 1) 내국 수출입을 규정하는 제 35조 1항의 모든 규정을 폐지한다.
- 2) A항과 B항의 경우는 관세법 시행규칙(38/2015/TT-BTC)의 상응하는 규정으로 전환한다.
- 3) 내국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그러나 해당 공문을 접한 다수의 기업이 A, B, C 항에 속하는 경우가 실제로 어떤 경우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질의가 다수 존재하며, 폐지 시 우려되는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공문 본문 공문 부록에 포함된 자료, 6월달 관세총국과의 세미나에 참여하여 청취한 관세 총국의 의견 등을 종합하였을 때, 3가지 내국 수출입 상황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임가공 의뢰 물품의 내국 수출입 관련 (제 35조 제 1항 a)

관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임가공 계약에 따른 임가공 상품, 유상 및 무상 대여된 기계 및 설비, 잉여 원재료 및 소모품, 폐기물 및 폐품으로써 상법 시행령(187/2013/ND-CP)에서 정하는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은 내국 수출입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상법 시행령 조항에서는 임가공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임가공 위탁자는 관련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임가공 상품, 기계, 설비, 잉여 원재료 및 소모품, 폐품, 폐기물 등에 대한 내국 수출이 가능하며, 임가공 수탁자는 위임을 받아 해당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국 수출입 시 관련된 법률 조항 준수가 필요하며, 근거가 되는 판매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베트남 관세총국의 공문에 따르면, 이러한 임가공 상품에 대한 수출입 절차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 1) 임가공 위탁을 하는 외국 상인(A)의 입장에서, 자신의 소유권에 속한 물품을
- 2) 다른 베트남 내에 있는 기업(B)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 3) 임가공 위탁자(A)와 베트남 내 기업(B) 간 판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때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은 임가공 위탁자(A)가 직접 수령하거나, 임가공 수탁자(C)를 통해서 지급 받을 수 있다.

- 4) 이 경우 대금 지급은 외국 상인(A)이 수령하나, 물품의 이동은 외국 상인(A)의 지시를 통해 임가공 수탁자(C)로부터 베트남의 물품 구매자(B)에게로 즉시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이동은 베트남 내에서 이뤄지지만, 임가공 수탁자(C)는 임가공 위탁자(A)의 지시 및 위임을 받아 내국 수출로써 신고를 해야하며, 물품을 구매하는(B)는 물품 수령 과정에서 내국 수입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관세총국은 해당 절차에 대해 순수한 상업적 활동으로써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가공 위탁자 및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기에, A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항에 따른 전환의견을 냈다.

현재 다수의 기업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A항이 존치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임가공된 완제품을 해외에 수출하지 않고, A항에 의거하여 국내 시장에서 외국 상인이 직접 판매(내국 수출)하는 거래 형태는 유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다. 아직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공문 본문의 내용을 참조 시, 관세총국은 “임가공 위탁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물품을 베트남 시장으로 판매, 소비하는 것은 C항에서 규정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즉, 수출 목적으로 임가공된 물품을 외국 상인 지시에 따라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폐지 대상인 C항의 경우와도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또한 “동일한 성격을 가진 거래 간의 차별을 막기 위해 임가공 물품에 대한 수출입 규정의 제고 및 폐지를 제안”하는 부분에서 “임가공 물품을 베트남에 있는 기관 및 개인에게 판매 시, 베트남 국내에 있는 두개의 기업 간의 거래처럼 이뤄져야 하며, 임가공 수탁자는 임가공 물품에 대해 일반 수입 물품과 동일하게 용도변경 신고 및 관련 수입세 납부를 해야한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A항이 존치되더라도 국내 판매 과정에서 임가공 면세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납부 절차를 거치게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추후 관세총국의 구체적인 전환 방향에 대한 추적이 필요한 부분이다.

B. 국내 기업과 EPE 기업 및 비관세 구역에 있는 기업 간 판매 (제 35조 제 1항 b)

비관세 구역과 및 비관세 구역으로 간주되는 EPE 기업은 베트남 영토가 아닌 외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관세총국 공문에서는 이들과 그 외 국내 기업 간의 거래를 일반적인 수출 및 수입으로 간주하고 있다.

B항의 경우 EPE 및 비관세구역의 특성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관세총국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아, 현행과 같은 형태로 유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C. 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른 물품 배송 및 수령 (제 35조 제 1항 c)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제 35조 제 1항 C 호의 폐지에 대한 것으로, 관세총국의 공문에서 설명되는 C항에 해당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베트남 기업 (A)는 베트남에 대표사무소가 없는 외국 상인(C)와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베트남 기업 (A)는 외국 상인 (C)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 2) 외국 상인 (C)는 베트남 기업 (A)로 공급하는 물품을 베트남에서 구매하기 위해 베트남 기업 (B)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외국 상인 (C)는 베트남 기업 (B)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 3) 이 때, 물품의 이동은 외국상인 (C) 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기업 (B)로부터 베트남 기업 (A)에게로 이뤄진다. 따라서 물품의 국경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 4) 이 때 베트남 기업 (B) 는 내국 수출 신고를 이행하고, 베트남 기업 (A) 는 내국 수입 신고를 이행한다. 이 경우 관련 법제에 따른 세금 납부 및 규정 이행이 필요하다.

해당 경우에 대해 베트남 관세총국은 상법 및 대외무역관리법 등 상위 법상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령 조항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 1) 해당 거래는 결국 베트남 기업 (B)로부터 베트남 기업 (A)로의 물품 공급이며, 순수한 국내 거래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다른 국내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물품 공급에 대해 세관 절차가 아닌 국내 거래에 상응하는 절차 및 부가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관이 아닌 국내 세무 기관의 관리 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2) 해당 거래에 대해 수출 거래로 간주하여 적용되던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환급 조항 등에 대한 통일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 3) 해당 거래로 외국 상인 (C)는 물품 판매 계약에 따른 소득을 얻게 된다. 이는 법인세나 외국인 계약자세 대상이기에, 외국 상인 (C)는 해당 거래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대리인을 두어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 4) 기존에 해당 거래에 대해 베트남 기업 (A)가 외국 상인 (C)에게 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내국 수입 신고서를 제출해 왔다. 앞으로는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 신고서 발급이 될 수 없기에 은행 결제 시 계약서, 영수증 제출 등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이 필요하다.

□ 내국 수출입 폐지안에 따른 우려 사항

○ 기존 내국 수출입 조항의 활용 사례

- 다수의 진출 기업은 35조 1항 C의 규정을 활용하여, 수출용 물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 구매 과정에서 활용. 활용 예시는 다음과 같음.
 1. 베트남 현지에 있는 진출 기업에서 물품 구매 계약 및 대금 송금 업무 기능 등을 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모기업(A)에서 베트남 내 원자재 공급자(B)와 계약 및 대금 송금 후, 원자재 공급자(B)로 하여금 진출 기업(c)로 원자재 인도를 요청하는 방식
 2. 1차 가공업체 (A)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2차 가공업체 (B)로 공급한 후 추가 가공을 거쳐 최종 수출자(C)로 공급하는 등 여러 차례의 가공을 필요로 하는 거래 형태에서, 1차 가공업체 (A)는 원자재 수입 시 (B)로의 내국 수출을 근거로 하여 임가공 면세 및 수출제조용 면세를 적용하는 방식
- 내국 수출입 제도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대금 결제 방안 구축 필요에 따른 진출 기업의 부담이 커진 상황.
- 2)의 경우와 같이 여러 번의 국내 공급 이후 최종적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중간 가공 업자가 납부한 수입 관세에 대한 환급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 또한, 많은 기업의 우려 사항으로 지적.
- 폐지안에 대비하여 우리 진출 기업들은 임가공 계약 방식 활용, 보세 창고 활용, EPE 기업 전환 등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구상하고 있으나, 아직 내국 수출입 폐지 이후 전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나오지 않아, 한동안 진출 기업들의 업무에 있어서는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

작 성 자

- KOTRA 하노이무역관 김지은
- KOTRA 하노이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박민설
- KOTRA 하노이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이연정

베트남 임가공 제도와 EPE 기업에 대한 연구

Global Market report 23-017

발 행 일 2023년 07월
발 행 인 유정열
발 행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13
전 화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KOTRA 하노이무역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84-24-3946-0511)

• ISBN: 979-11-402-0683-4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